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305,387,025 | 9,161,611 |
| 일반회계 | 291,064,351 | 8,731,931 |
| 특별회계 | 14,322,674 | 429,680 |
| 기타특별회계 | 14,322,674 | 429,680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2,664,595 | 79,938 |
|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| 126,506 | 3,795 |
| 의료급여특별회계 | 1,040,446 | 31,213 |
|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| 296,000 | 8,880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290,942 | 8,728 |
|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| 345,572 | 10,367 |
|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| 4,492,724 | 134,782 |
|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| 563,000 | 16,890 |
| 장흥담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| 2,683,203 | 80,496 |
|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| 1,819,686 | 54,591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733,156천원으로 한다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

제 5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

제 6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

제 7 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